

〈 붙임 1. 법정 의무교육 관련 근거 및 이수표 〉

구 분		대 상	기 준	관 련 근 거	주 관	미이수시 불이익
젠더폭력예방	성희롱	전직원	각 연1회 (각 1시간) * 통합 시 총 4시간	·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	여성가족부	500만원 이하 과태료 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)
	성폭력			·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		
	성매매			·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		
	가정폭력			·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		
장애인식개선	전직원	연 2회 (각 1시간)	·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 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	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	300만원 이하 과태료 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)	
인권일반	전직원	연 1회 (1시간)	·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(인권교육)	市	서울시 기관평가 감점	
직장 내 괴롭힘	전직원	연 1회 (1시간)	· 근로기준법 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 · 공단 취업규칙 제54조의3(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	고용노동부	사업주 의무 (근로감독시 점검사항)	
아동학대예방	전직원	연 1회 (1시간)	·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의2	보건복지부	300만원 이하 과태료 (아동복지법 제75조)	
산업안전보건교육	사무직	12시간 (반기별 6시간)	·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	고용노동부	500만원 이하 과태료 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)	
	그 밖의 근로자	24시간 (반기별 12시간)				
	관리감독자	16시간				
	신규입사자	8시간				
개인정보보호	전직원	연 1회 (1시간)	·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	개인정보보호위원회	사고발생시 5억원 이하 과징금 (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)	
정보공개교육	전직원	연 1회 (1시간)	·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6조	행정안전부	서울시 기관평가 감점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)	
청렴교육	1~7급	6시간	·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'반부패 청렴교육 이수'	경영평가	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감점 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)	
	기 타 (사회복지직 포함)	4시간				
CS 교육	전직원	연 1회	·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표 '고객만족성과'	경영평가	행안부 기관평가 감점	
일·생활균형교육	전직원	연 1회 (1시간)	· 市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지표 '조직 문화 개선'	경영평가	서울시 기관평가 감점	
직무스트레스	전직원	연 1회	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	고용노동부	행안부 기관평가 감점 (근로감독시 점검사항)	

※ 청렴교육의 경우 신규 승진자는 대면교육 1회 필수